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09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 (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4. 10. 31.

다. 회 부 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II. 검토의견

1.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 (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안
○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부장관 소속</u> 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둠	○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u> 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기획재정부장관</u> 이 위원장이 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국무총리</u> 가 위원장이 됨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있음.¹⁾

개정안은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또한 국무총리로 변경하려는 것임.

1) 「통계법」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계 표준분류 작성 등 통계의 작성·보급·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장관·통계청장 등 13개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등 관련기관의 장과 통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국가통계위원회 개요]

구분		국가통계위원회
근거법령		「통계법」 제5조의2 및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소속 /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위원	정수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당연직	○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통계청장 ○ 한국은행총재·한국개발연구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장(중소기업중앙회장)
	위촉직	○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 통계 또는 관련 분야 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상기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능		○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 ·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 ·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 · 행정자료의 활용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현재 우리나라는 각 기관이 고유 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보급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2024년말 기준으로 436개 통계작성기관이 총 1,35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경제분야 통계뿐만 아니라 보건, 환경, 농림수산,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가 생산되고 있음.

[국가승인통계 현황]

(단위: 개)

구분			작성기관 수	작성통계 수
정부기관	중앙 행정기관	통계청	1	66
		통계청 외	49	400
	지방자치단체		260	676
	소계		310	1,142
통계작성 지정기관	금융기관		7	23
	공사/공단		36	67
	연구기관		32	49
	협회/조합		26	32
	기타		25	45
	소계		126	216
계			436	1,358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부문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단위: 개)

구분	2007년	2024년
계	623	698
경제부문	361 (57.9%)	348 (49.9%)
경제부문 외	262 (42.1%)	350 (50.1%)

* 경제부문: 소득·소비·자산, 건설·교통, 임금·물가, 경제일반, 국민계정, 재정, 금융, 무역·국제수지 등

* 경제부문 외: 인구, 범죄·안전, 환경, 보건복지, 교육, 문화·여가, 노동, 과학기술 등

* 지역통계(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제외(2007년 116건, 2024년 660건)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

이러한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는 통계 작성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작성 기준 설정 및 유사·중복통계 조정 등 국가 통계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조정기능이 중요할 것임.

개정안은 국가통계 관련 사무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통계 기준을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현재도 「통계법」 등 관련법상 충분한 독립성·중립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국가통계의 대다수가 경제분야 또는 경제정책에 활용되므로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획재정부 소속이 적합하다는 입장임.

국무조정실 또한, 관련법상 독립성·중립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반면, 통계청은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통계작성기관을 총괄하며 각 기관이 작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국가통계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가 적합하다는 의견임.

통계작성기관의 범위가 각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포함하고 있고 통계 작성 분야도 광범위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통계위원회를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통계에 대한 총괄·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다만, 현재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다수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고,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단위: 개, 2024. 6. 30. 기준)

구분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각 부처 소속	계
계	18	58	514	590
행정위원회	1	10	29	40
자문위원회	17	48	485	550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2024. 8

참고로, 국가통계위원회의 최근 회의개최 실적은 다음과 같음.

[국가통계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단위: 회)

구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계	출석	서면	계	출석	서면
2021년	1	－	1	14	4	10
2022년	1	－	1	11	8	3
2023년	1	－	1	13	11	2
2024년	2	－	2	16	15	1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부 장관</u>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 ----- ----- <u>국무총리</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기획재정부장관이</u> 위원장이 된다.	③ ----- ----- <u>국무총리</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